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22

발의연월일: 2021. 11. 25.

발 의 자:서동용・서영석・김철민

도종환 • 박찬대 • 권인숙

인재근 · 김정호 · 안민석

이동주 • 유기홍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됨.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횡령 또는 업무상의 횡령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 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개 정 안 |
|---------------------|-------|---------------------|
|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 -) (생 |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현 |
| 략) | |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u> <신 설></u> | |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 |
|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
| | | 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 |
| | | 교수 및 조교수는 교원으로 재 |
| | | 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 | |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 |
| | | 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
| | | 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
| | |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
| | | 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
| | | 당연히 퇴직한다. |